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페루 정부의 관련법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오 선 영*

차 례

- I. 서 론
- II. 나고야의정서 개관 및 페루 현황
- III.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페루 정부의 관련법제 분석
- IV.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자들을 위한 대응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 V. 결 론

[국문초록]

나고야의정서가 발효가 되어 유전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고는 페루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법체계를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전통지식 이용자들을 위한 대응 마련에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페루는 이미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통(집단)지식 보호를 위하여 법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즉 페루는 관련법에 PIC절차 및 MAT에 해당하는 허가계약서에 대한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규정을 이미 도입하였다. 페루법의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용자는 유전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하는 목적에 따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그 대상을 제공자로부터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양도 받은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이익 공유 조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이익 공유 협상의 노하우도 개발해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인식을 제고하는 등 노력을 기울리 하지 말아야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조교수.

한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관련 이행법률 안에 내외국인 차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강구해 두어야 한다.

I. 서론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국내에 들여와 이들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가와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국제 지침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¹⁾가 2014년 10월에 공식 발효가 되었다. 2015년 7월 기준으로 총 92개의 국가가 나고야의정서에서 서명(signatures)을 한 상태이며, 59개의 국가가 당사국으로 등록되어 있다.²⁾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다음 당사국총회 시기인 2016년 전까지 나고야의정서의 비준을 예상하고 있으며, 당 의정서의 비준 및 성공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단계로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Access)과 이익 공유(Benefit-sharing)를 위한 국내법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³⁾

나고야의정서의 해석과 이행에 대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국과 이용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제공국들은 이미 자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익 공유를 위한 법제도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에 마련해 두고 있기도 하다. 이에 페루도 예외는 아니며, 이미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은 개정 작업을 거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유전자원과 관련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이미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제공국가들의 법과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전

1)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B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Oct. 29, 2010.

2) 각 국가들의 비준과 서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s://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default.shtml> (검색일 2015년 7월 13일).

3) 우리나라 환경부가 2013년 12월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하였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부국이기도 하며,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의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는 페루의 사례를 통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대응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제2장에서 먼저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내용을 개관하고 페루의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페루의 법체계를 분석하여 제4장에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점들을 살펴 적절한 대응방안 제시 및 이용자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나고야의정서 개관 및 페루 현황

1. 나고야의정서 핵심 내용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의 3대 목적인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2010년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를 통하여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여겨지던 유전자원에 주권적 개념이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이로써 유전자원 부국들은 자국의 유전자원을 경제적 자산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생물해적행위(biopiracy)를 합법적으로 규탄할 수 있게 되었다.

나고야의정서에 의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이다.⁴⁾ 그리고 이러한 전통지식은 반드시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이하 ILC)가 보유한 것으로 유전자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⁵⁾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의 제공 국가에게 미리 접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이하 PIC)이라

4) 나고야의정서 제3조.

5) 나고야의정서 제7조. 적용범위의 제한은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국내의 유전자원 외에는 나고야의정서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전통지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다.⁶⁾ PIC을 발급하는 주체는 해당 국가의 자국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 유전자원인 경우에는 제공국가의 국가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y)이 담당하고 전통지식인 경우에는 그것을 보유한 ILC의 대표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PIC을 발급하는 단계에서, 제공국은 이용자에게 이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눌 것인지 물어볼 수 있으며, 이때 이용자는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이하 MAT)에 따라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여야 한다.⁷⁾ 공유 대상이 되는 이익은 반드시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이때의 이용(utilization)이란 의미는 적용대상을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한 것을 뜻한다.⁸⁾ 따라서 유전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 연구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이익을 제공국가와 공유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 한다.

해외의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국내에 반입하여 이를 이용하는 자는 나고야의정서 상의 의무준수(Compliance)를 이행하여야 하며, 당사국들은 의무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점검기관(Checkpoints)은 이용자의 의무준수를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⁹⁾ 따라서 이용자는 점검기관에 제공국가의 PIC을 제대로 발급받았으며 MAT를 체결하여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동향 및 필요 정보는 정보공유센터(Clearing House)에서 공유 되고 있다.¹⁰⁾ 당 의정서가 발효된 지 9개월이 되었는데, 현재 59개의 당사국뿐만 아니라 아직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들도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s)을 지정하여 자국의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¹¹⁾ 그러나 당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불과 14개국뿐이며, 국가점검기관을 지정한 국가도 4개국에 불과하다.¹²⁾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6) 나고야의정서 제6조 및 제7조.

7) 나고야의정서 제5조.

8) 나고야의정서 제2조 (c)항.

9) 나고야의정서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10) 나고야의정서 제14조. 현재 CBD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센터는 <https://absch.cbd.int/>

11) 각 당사국의 현황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s://absch.cbd.int/> (검색일 2015년 7월 10일).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외교부가 국가연락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 전통지식이 풍부한 페루는 자국의 관련 조치 공개뿐만 아니라 점검기관의 지정 등 어느 국가보다도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다.

2. 페루 현황

페루는 남아메리카의 서부에 위치하여 잉카 문명의 발상지로 유명하다. 지리적으로는 태평양 해안의 건조한 평야에서 안데스 산맥, 아마존 분지의 열대우림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우며, 아메리카의 토착민을 비롯한 다양한 인종이 섞여있는 나라이다.¹³⁾

페루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기 이전부터 자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약탈당하는 경험에 의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왔다. 적절한 이익 공유의 실패사례로 유명한 페루의 사카잉키가 있다.¹⁴⁾ 오메가3 등이 풍부한 사카잉키는 기적의 씨앗으로 불리며 페루의 아사닌카족이 오랫동안 미용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하여 왔다. 이에 프랑스 원료업체인 코그니스사(Cognis)의 연구소인 세로비올로지크사는 이러한 아사닌카족의 사카잉키 효능 및 사용방법에 주목하였고, 이를 마스크 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사닌카족의 허가 없이 대단위로 사카잉키를 채배하고 나아가 특허 출원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페루 정부와 지역토착민은 코그니스사의 특허 출원은 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탄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고 결국 코그니스사는 특허 출원을 포기해야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페루는 자국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이미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여느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보다도 자국의 법적 그리고 행정적 조치를 CBD 사무국의 정보공유센터에 일찍이 공유하여 왔다. 그리고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 2014년 4월 6일에 『나고야의정서 비준(Ratifica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라는 행정명령을 통하여 2014년 7월 3일 페루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

12) *Id.*

13) 페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ED%8E%98%EB%A3%A8> (검색일 2015년 7월 8일).

14) 국립생물자원관 ABS 정보서비스센터,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2014, 89면.

하고 이에 당사국이 되었다.¹⁵⁾

페루의 관련 국가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책임기관은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농업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수산부(Ministry of Production and Fisheries), 국립농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그리고 국립경쟁방지및지식재산권보호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of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NDECOPI)로 총 다섯 곳이며, 국가연락기관은 환경부 단독이다. 그리고 점검기관으로는 INDECOPI와 ‘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Access to Peruvian Biological Diversity and Collective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National Commission Against Biopiracy)’로 지정되어 있다.¹⁶⁾ 관련 국가 기관들이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나고야의 정서의 핵심내용과 연관된 전문 국책연구소 및 이행준수 점검에 깊은 관련이 있는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또한 동일 기관이 서로 역할이 다른 국가책임기관과 점검기관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Ⅲ.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페루 정부의 관련법제 분석

1. 법률의 목적 및 범위

페루는 2002년 8월 11일 『생물자원에 대한 토착민의 집단지식 보호 체계법(Law Introducing a Protection Regime for the Collective Knowledge of Indigenous

¹⁵⁾ Supreme Decree No. 029-2014-RE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www.minam.gob.pe/diversidadbiologica/wp-content/uploads/sites/21/2014/02/029-2014-RE.pdf\(spanish\)](http://www.minam.gob.pe/diversidadbiologica/wp-content/uploads/sites/21/2014/02/029-2014-RE.pdf(spanish)) (검색일 2015년 6월 23일). 본 법안은 총3개의 조(Article)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Supreme Decree는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에 의해 이서되어 페루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다는 내용이다.

¹⁶⁾ ABSCH <https://absch.cbd.int/countries/PE> (검색일 2015년 7월 10일). 각 부처의 이름은 저자가 번역한 것임.

Peoples Derived from Biological Resources)』을 제정하여 이를 이행하여 오고 있다.¹⁷⁾ 본 법은 총 71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페루 토착민(indigenous peoples and communities)들의 생물자원과 관련된 집단지식(collective knowledge)의 보호를 위한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권리와 의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페루 정부는 토착민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집단지식을 이용하고 처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페루 정부의 전통지식 보호 체계를 소개하고 하고 있다.¹⁸⁾

본 법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핵심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에서는 ILC(지역토착공동체)가 보유한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는데 페루법에서는 ILC라는 용어 대신에 이를 토착민(Indigenous peoples)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페루법에 따른 토착민이란, 페루 정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권리를 향유하던 원주민(aboriginal peoples)을 의미하며, 이들은 특정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스스로도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¹⁹⁾ 나아가 토착민에는 지방 및 원주민 공동체(rural and native communities)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여 본 법의 토착민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된다. 실제로도 CBD 사무국에서 이들을 ILC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본 법은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라는 용어 대신에 이를 집단지식(collective knowledge)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집단지식이란 토착민 그리고 지역사회가 생물다양성의 성질, 이용 및 특성 등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서로 전승되고 축적된 지식을 말한다.²⁰⁾ 본고에서는 ‘집단’지식이라는

17) Law N° 27811 LAW INTRODUCING A PROTECTION REGIME FOR THE COLLECTIVE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DERIVED FROM BIOLOGICAL RESOURCES (이하, Law N° 27811), 본 법의 영어버전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www.wipo.int/edocs/lexdocs/laws/en/pe/pe011en.pdf> (검색일 2015년 4월 30일).

18) *Id.*, at 제1조.

19) *Id.*, at 제2조(Definitions) (a)항. “Indigenous peoples” means aboriginal peoples holding rights that existed prior to the formation of the Peruvian State, maintaining a culture of their own, occupying a specific territorial area and recognizing themselves as such. These include peoples in voluntary isolation or with which contact has not been made, and also rural and native communities...

20) *Id.*, at 제2조 (b)항. “Collective knowledge” means the accumulated, transgenerational knowledge evolved by indigenous peoples and communities concerning the properties, uses and characteristics of biological diversity... 제10조(Collective nature of the knowledge)에서 이러한 지식은 토착민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에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2개 이상의 토착민에게 걸쳐서 해당 지식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표현을 나고야의정서와의 조화를 위하여 ‘전통(집단)지식’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집단(전통)지식을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토착민 단체 대표에게 PIC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 이용자인 제3자는 토착민 단체와 이들의 전통(집단)지식 이용을 위한 허가계약서(License Contract for the Use of Collective Knowledge)를 체결하여야 한다.²¹⁾ 이는 나고야의정서 상의 MAT와 유사한 것으로, 페루 토착민들의 전통(집단)지식을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이용약관 및 계약조건을 의미한다.²²⁾ 나고야의정서 상의 용어와 페루법에서의 용어가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은 페루법이 당 의정서가 채택되기도 훨씬 전에 발효가 되어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용어 사용이 페루법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추측된다.

본 법은 생물자원과 관련이 있는 토착민들의 전통(집단)지식에 적용이 되며, 토착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전통(집단)지식 교류는 본 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²³⁾ 이를 통해 본 법은 토착민들의 전통(집단)지식의 보호 및 보전, 전통(집단)지식의 광범위한 적용 및 개발 촉진, 전통(집단)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촉진, 토착민들의 잠재력 강화 및 개발 촉진, 토착민들의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개발된 발명품에 대한 특허 신청 시 신규성(novelty) 등을 심사함에 있어 이들의 지식을 선행 기술(prior art)로 고려되어지지 아니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 등을 목적으로 발효되어 시행되어지고 있다.²⁴⁾

2. 전통(집단)지식에서의 접근(Access)

과학적 연구, 상업적 및 산업적 응용을 목적으로 페루 토착민의 전통(집단)지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식을 보유한 토착민 단체의 대표에게 PIC을 신청하여야

21) 사전통보승인과 허가계약서는 전통(집단)지식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소개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2) Law N° 27811 제2조 (d)항. “License contract for the use of collective knowledge” means an express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he organization of indigenous peoples possessing collective knowledge and a third party that incorporates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use of the said collective knowledge...

23) *Id.*, at 제3조(Scope of protection afforded by this legislation) 및 4조(Exception to the regime).

24) *Id.*, at 제5조(objectives of the regime).

한다(shall).²⁵⁾ 그리고 그러한 신청을 받은 토착민 단체의 대표는 가능한 한 많은 토착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PIC을 발급하여 주는 단계에서는 특히 토착민들의 영적 가치와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관심과 걱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shall).²⁶⁾ 이는 토착민이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거나 2개 이상의 토착민에게 보유되어 있음을 인정하여 전체 공지가 불가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그리고 상업적 또는 산업적 응용을 위한 접근인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계약서(license agreement)를 체결해야 하는데, 동 계약서에는 반드시 이용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는 문구의 삽입과 이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²⁷⁾ 따라서 페루 토착민이 보유한 전통(집단)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페루 중앙정부가 아닌, 그러한 지식을 보유한 토착민 단체의 대표가 PIC 발급 주체가 된다. 또한 과학적 목적과 같은 순수연구를 위한 경우에는 PIC 발급 대상이 되나 허가계약서를 체결해야할 대상은 아니다.

3. 이익 공유(Benefit-Sharing)

본 법은 이용자가 페루 토착민의 전통(집단)지식을 이용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토착민과 공유함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본 법에는 구체적인 분배 비율을 명시하는 등 이익 공유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이용자는 토착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익 공유 이외에도 “토착민 개발을 위한 기금(Fund for the Development of

²⁵⁾ *Id.*, at 제6조(Conditions of Access to Collective Knowledge). Those interested in having access to collective knowledge for the purposes of scientific, commercial and industrial application shall apply for the prior informed consent of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the indigenous peoples possessing collective knowledge. The organization of the indigenous peoples whose prior informed consent has been applied for shall inform the greatest possible number of indigenous peoples possessing the knowledge that it is engaging in negotiations and shall take due account of their interests and concerns, in particular those connected with their spiritual values or religious beliefs...

²⁶⁾ *Id.*

²⁷⁾ *Id.*, at 제7조(Access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or industrial application). In the event of access for the purposes of commercial or industrial application, a license agreement shall be signed in which terms are provided that ensure due reward for the said access and in which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the benefits deriving therefrom is guaranteed.

Indigenous Peoples)”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²⁸⁾ 토착민 개발을 위한 기금이란 토착민들의 활동과 프로젝트에 금융을 지원하는 등의 토착민을 위한 포괄적인 개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²⁹⁾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러한 기금에 대한 지급은 상품판매에 따른 총매출액(세전)의 10 퍼센트 이하여서는 아니 된다.³⁰⁾ 총매출액이 순수이익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토착민과의 이익 공유 외에도 기금에 대한 지급은 이용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종 상품에 이용되어진 전통(집단)지식의 활용 정도, 가령 그러한 지식으로 인해 상품의 연구개발비 절약에 기여된 정도에 따라 더 큰 액수가 기여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³¹⁾

이익 공유 의무 조항은 이미 공개된 전통(집단)지식의 이용에도 적용될 수도 있다. 즉, 이미 공개되어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한 전통(집단)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개가 20년 이내인 경우에,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위 기금에 특정 비율(세전)을 공유해야 한다.³²⁾ 이러한 조항은 이용자들에게는 많은 부담이기는 하나, 중국과 같은 주요 제공국들의 관련 법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이는 한국과 일본 등지에 문서 등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중국의 전통지식 보호에 대한 시간적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참고 조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중의학을 포함한 중국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미 공개된 지식이어도 이익 공유의

²⁸⁾ *Id.*, at 제8조(Percentage accruing to the Fund for the Development of Indigenous Peoples)
A percentage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ten per cent of the value, before tax, of the gross sales resulting from the marketing of goods developed on the basis of collective knowledge shall be set aside for the Fund of the Development of Indigenous Peoples provided for in Articles 37 et seq...

²⁹⁾ *Id.*, at 제37조(Purpose of the Fund for the Development of Indigenous Peoples).

³⁰⁾ *Id.*, at 제8조.

³¹⁾ *Id.*, ...The parties may agree on a greater percentage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rect use or incorporation of the said knowledge in the resulting end product and the degree to which the said knowledge contributed to the reduction of the cos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 on derived products, among other things.

³²⁾ *Id.*, at 제13조(Collective Knowledge in the Public Domain) ... In cases where the collective knowledge has passed into the public domain within the previous 20 years, a percentage of the value, before tax, of the gross sales resulting from the marketing of the good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at knowledge shall be set aside for the Fund for the Development of Indigenous Peoples provided for in Articles 37 et seq.

대상이 됨을 주장하고 있기에, 우리 정부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공개되어진 지식은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없도록 요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³³⁾

4. 허가계약서(License Contract)

전술하였듯이, 허가계약서는 나고야의정서의 MAT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전통(집단)지식의 이용에 대한 계약 조건으로서 토착민의 단체와 이용자인 제3자 사이의 협의서이다. 따라서 페루 토착민의 전통(집단)지식에 접근하여 이를 상업적 또는 산업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는 토착민 단체 대표에게 PIC을 구함과 동시에 반드시 서면으로 허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³⁴⁾ 허가계약서는 케추아어와 같은 모국어와 스페인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동 계약서는 연장이 가능한데 그 연장 기간은 1년 이하이거나 3년 이상은 아니 된다.³⁵⁾

본 법에서는 허가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필수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의 신원, 이용하고자 하는 전통(집단)지식의 내용, 이익 공유에 따른 지급액으로서 토착민이 받게 될 보상은 총매출액(세전) 5 퍼센트 이하는 불가 한다는 규정, 전통(집단)지식 이용 및 가치를 포함하여 이용의 목적, 위험요소 및 영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 조항, 전통(집단)지식을 이용한 연구의 진행사항, 상품의 상업화 및 판매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가 정기적으로 제공자에게 보고한다는 의무 조항, 이용자는 전통(집단)지식의 제공자인 토착민이 스스로 전통(집단)지식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역량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무 조항이다.³⁶⁾

그리고 이러한 허가계약서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집단)지식에 대한 국가책임기관이면서³⁷⁾ 점검기관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는 INDECOPI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³⁸⁾ 그리고 INDECOPI는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이 포함되

33) 중국은 현재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법안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회의에서 공개된 전통지식도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34) Law N° 27811 제7조 및 제26조(Compulsory written form for license contracts).

35) *Id.*, at 제26조.

36) *Id.*, at 제27조(Contents of the license contract).

37) *Id.*, at 제63조(Competent National Authority).

38) *Id.*, at 제25조(Compulsory registration of license contracts).

지 아니한 허가계약서를 등록하지 아니 한다.³⁹⁾ 이처럼 페루에서는 허가계약서의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등록 시에는 허가계약서 외에 토착민과 그들의 단체 대표 그리고 이용자인 계약상대방을 명시하여야 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이러한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었다고 하는 증거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⁴⁰⁾ 등록 신청의 주체에 대한 언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허가계약서 등록 의무는 페루 정부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이므로 토착민 단체의 대표가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허가계약서의 체결 의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의 등록 의무는 페루가 토착민의 전통(집단)지식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토착민과 이용자 사이에 맺어진 허가계약서는 또 다른 이용자가 같은 전통(집단)지식을 이용하거나 그들과 다른 허가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막지 못하여, 현재 대 또는 후속세대가 같은 지식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권리를 계약서의 조항으로 막지 못한다.⁴¹⁾ 즉 페루 토착민의 전통(집단)지식은 한 명의 이용자가 독점으로 이를 이용할 수가 없는데, 이는 전통(집단)지식의 다양한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동 법은 또한 허가계약서에 토착민 단체 대표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제3자에게 2차인가가 금지된다.⁴²⁾ 실제로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자는 PIC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양도받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토착민이 직접 제공한 경우가 아닌 이용자로부터 양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와 이용자가 체결한 허가계약서에 2차인가 여부 또는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³⁹⁾ *Id.*, at 제27조 ... INDECOPI shall not register contracts that do not conform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⁴⁰⁾ *Id.*, at 제28조(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of license contracts).

⁴¹⁾ *Id.*, at 제32조(Scope of licenses for use) The licensing of the use of the collective knowledge of an indigenous people shall not prevent others from using or licensing the same knowledge, nor shall it affect the righ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to continue to use and develop collective knowledge.

⁴²⁾ *Id.*, at 제33조(Prohibition of sublicensing) Sublicensing shall be allowed only with the express permission of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the indigenous peoples that granted the license.

5. 제재조치

페루법은 토착민 단체 대표의 허가 없이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한 전통(집단) 지식을 공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절한 제재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전통(집단)지식을 보유한 토착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소송(infringement action)을 취할 수 있으며⁴³⁾ 이와 관련된 증거제출(evidence), 조사(inspection), 벌금 등의 제재를 위한 절차적인 과정도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⁴⁴⁾ 특이한 것은 토착민의 권리 침해가 제기되었을 경우, 그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진다는 것이다.⁴⁵⁾ 통상 타인의 위반을 주장하는 자가 일차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만, 토착민의 전통(집단)지식과 관련하여서는 토착민의 권리를 침해한 자, 즉 이용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이는 소송준비 등에 취약한 토착민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여겨진다. 나아가 토착민 단체의 대표는 그들의 전통(집단)지식을 본 법에 위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한 자에게 소유권(ownership) 및 배상(indemnification)을 청구할 수 있다.⁴⁶⁾

소송단계에서, 국가책임기관인 INDECOPI의 담당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부여할 수 있다.⁴⁷⁾ 가령 전통(집단)지식 이용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압수 및 몰수, 또는 피고인의 작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도록 하는 명령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잠정조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벌금(fine) 부과가 가능하다.⁴⁸⁾ 페루법은 소송 이외에도 화해, 중재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⁴⁹⁾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액은 조정이 가능하다.⁵⁰⁾ 기본적으로 전문

43) *Id.*, at 제43조(Actions for violation of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44) *Id.*, at 제47조-62조.

45) *Id.*, at 제44조(Reversal of the burden of proof) Wher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an indigenous people possessing specific collective knowledge is alleged, the burden of proof shall be on the defendant.

46) *Id.*, at 제45조(Actions claiming ownership and indemnification).

47) *Id.*, at 제49조(Provisional measures).

48) *Id.*, at 제50조(Failure to comply with a provisional measure).

49) *Id.*, at 제51조(Conciliation)와 제52조(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Machinery).

50) *Id.*, at 제58조(Calculation basis for fines)와 제59조(Reduction of the fine).

가들의 의견 등 증거물들의 관리와 관련된 비용은 국가책임기관인 INDECOPI가 처음에 부담하지만, 최종 판결문에서 누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지의 결정에 따라 이를 INDECOPI에 반환해줘야 한다.⁵¹⁾ 그리고 각종 제재조치 부과와 관련된 정보는 INDECOPI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⁵²⁾ 이는 일반 대중에게의 정보 공개 및 상습적 위반을 발견해 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INDECOPI에 등록을 마쳐야 하는 것은 허가계약서뿐만 아니라 제재조치의 부과가 있는 경우 제재조치의 유형 및 이에 관한 사항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페루법에서는 권리에 대한 실제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적인 규정도 자세히 갖추고 있다. 다만 허가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한 내용, 가령 계약서에 명시된 이익 배분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허가계약서가 사적 계약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개입보다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결방안으로 해결하면 된다. 물론 허가계약서에 2차인가를 금지하였는데, 이를 이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은 토착민의 전통(집단)지식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되어,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적인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다.

6. 기타 규정

페루는 토착민들이 보유한 전통(집단)지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자국의 전통(집단)지식의 내용들을 문서화 하는 작업은 쉽지 않지만, 이러한 체계가 갖추어지면 자국의 유산으로 보호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에 페루는 일찍이 이러한 작업을 시작하였고, 등록된 지식은 본 법에 따라 페루 정부가 이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페루의 토착민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통해 이를 정부가 운영하는 등록소에 등록한다. 등록소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공공국립등록소(Public National Register), 비밀국립등록소(Confidential National Register) 그리고 지역 등록소(Local Registers)가 있으며 공공국립등록소와 비밀국립등록소는 국가책임기관인 INDECOPI에 의해 관리된다.⁵³⁾ 공공국립등록소는 이미 공개된 전통(집단)

⁵¹⁾ *Id.*, at 제65조(Expenses for administration of evidence).

⁵²⁾ *Id.*, at 제61조(Register of sanctions).

지식을 등록하게 되는데,⁵⁴⁾ 이미 공개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알려진 지 20년 이내인 경우에는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됨을 이미 전술하였다. 비밀국립등록소에 등록된 지식은 제3자와 협의의 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⁵⁵⁾ 따라서 이러한 지식은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으며,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허가계약서 내용이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토착민은 자신들의 관행과 관습에 따라 지역 등록소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INDECOPI는 등록소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⁵⁶⁾ 등록 신청과 작업은 토착민 단체 대표가 하며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도 동 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7. 기타 관련법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뿐만 아니라 이행준수(compliance) 역시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사항이며 성공적인 이행준수를 위해서는 점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점검기관은 해외의 유전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 이를 이용하는 자들을 점검하는 것으로서, 제공국가의 PIC 관련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MAT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관이다. 나아가 점검기관은 이행준수위원회 등에 이용자의 이행준수 여부 확인 요청뿐만 아니라, 제공국으로부터 이용자의 절차 위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이행준수를 조사하고 절차 준수를 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⁵⁷⁾ 특히 제공국들은 점검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페루는 일찍이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이행준수를 점검하고 있다. 본 법에서는⁵⁸⁾ 이행준수 및 점검기관에 대한 관련 규정이 부족하여 이와 관련되어 있는

53) *Id.*, at 제15조(Registers of the collective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54) *Id.*, at 제17조(Character of the public national register of collective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55) *Id.*, at 제18조(Character of the confidential national register of collective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The Confidential National Register of Collective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may not be consulted by third parties.

56) *Id.*, at 제24조(Local register of collective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57) 한국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제16조에서 이러한 점검기관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다른 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페루는 『페루의 생물다양성 및 토착민의 집단지식의 접근 보호법(Protection Act of Access to Peruvian Biodiversity and Collective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을 2004년 4월 7일에 발효하였다.⁵⁹⁾ 동 법은 총 여섯 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그리 길지 않은 법이지만, 페루의 풍부한 생물자원뿐만 아니라 토착민의 전통(집단)지식의 접근 보호를 위하여 ‘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를 창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페루 정부의 점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 위원회는 페루 생물자원 또는 전통(집단)지식을 불법으로 해적하는 행위를 규제하거나, 발명특허출원을 식별 또는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외국 특허사무소와의 정보 교환 및 대화 창구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⁶⁰⁾ 동 위원회는 INDECOPI와 긴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동 위원회에는 INDECOPI를 비롯한 각 국가책임기관의 대표들, 관련 국책연구소의 대표들, 시민사회의 2명의 대표(NGOs포함), 동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학교의 대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⁶¹⁾ 그리고 동 위원회는 대통령 각료회의에 반년마다 위원회의 활동, 사례 연구 및 권고안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⁶²⁾

실제로 페루는 동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페루산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의 해적행위를 찾아내고 있는데, 페루산 마카가 한 예이다. 마카는 페루 안데스 산맥의 해발 4천미터 고지대에 자생하는 자원으로서, 골다공증 또는 호르몬 불균형 치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이에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마카를 불법으로 반입하는 등 나고야의정서에 위반되는 사례들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⁶³⁾ 이에 동 위원회는 전 세계의 특허를 검색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도구를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페루산 마카를 이용하여 신청되는 폴란드, 중국, 심지어 한국에서의 특허 등록을 유심히 살펴

58) Law N° 27811, *supra* note 17.

59) Law N° 28216 PROTECTION ACT OF ACCESS TO PERUVIAN BIODIVERSITY AND COLLECTIVE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www.wipo.int/edocs/lexdocs/laws/en/pe/pe013en.pdf> (검색일 2015년 7월 2일).

60) *Id.*, 제4조(Functions of the Commission).

61) *Id.*, 제3조(Composition).

62) *Id.*, 제6조(Reporting to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of Ministers).

63) Agnes Rivera, “Maca Movements to Be Monitored, Says China,” *Peru This Week*, 2014년 8월 21일, <http://www.peruthisweek.com/news-maca-movements-to-be-monitored-says-china-103704> (검색일 2015년 7월 4일).

보고 있다.⁶⁴⁾

따라서 이용자는 페루 정부가 자국의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전통(집단)지식의 접근 및 이용을 전 세계 특허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준수를 점검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접근이나 이용을 근절하는 등 페루 정부 또는 토착민과의 투명한 협력을 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IV.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자들을 위한 대응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고 발효됨에 따라 페루,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부국들은 자국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보호 체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도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정 중에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법안 공개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산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통지식이 중의학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통지식에 대한 법체계를 일찍이 갖춘 페루법을 살펴보는 것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이에 따른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정책적 시사점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타 국가의 법과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 이용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와 더불어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지침 마련에도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기도 한다.

페루의 법을 살펴보면, 일단 내외국인의 차별 없이 모든 이용자들은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즉 페루의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기업이라든가

64) “페루 국가 생물해적행위 위원회 의장, 마카에 대한 생물해적행위 우려” 및 “페루, 세계 특허 모니터링을 통한 생물해적행위 감시”, ABS Newsletter, 제82호, 2015. 3. 18.

토착민이 보유한 전통(집단)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PIC 절차를 받아야 하며 허가계약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접근 신고 절차가 다르다.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가책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내국인은 필요한 경우에, 즉 제공국가가 대한민국 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⁵⁾ 이는 국가의 자산을 내국인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권 행사일 수 있으나, 내외국인 차별금지와 같은 통상 원칙과 저촉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⁶⁶⁾

폐루가 자국의 법으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집단)지식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 역시 우리의 전통지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토착민이 없기 때문에 나고야의정서를 통해 된장 또는 김치 등의 발효와 관련된 우리의 전통지식을 보호할 수 없게 되어 이행법률안 등을 통한 대책을 강구하기란 쉽지 않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FTA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통상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내용은 ‘지식재산권’ 챗터나 ‘환경’ 챗터에 많이 인용되어,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전통지식을 수록하고 있다.⁶⁷⁾ 한국이 기체결한 FTA를 살펴보면 한-중 FTA를 비롯하여 지식재산권 챗터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전통지식을 유전자원에 관련된 것만으로 한정해 둔 것은 한-콜롬비아 FTA 뿐이다.⁶⁸⁾ 그러나 당 FTA에서도 그러한 전통지식을 토착민이 보유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얼마든지 우리의 전통지식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양자통상협정과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 범위 외의 우리나라 전통지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5)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제9조 1항 및 4항.

66) 내외국인의 다른 신고절차가 통상 원칙에 저촉된다는 것은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67) 유전자원 제공국과 체결하는 FTA는 지식재산권 챗터에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특허 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의도하고자 하는 제공국가의 요구 때문이다.

68) 한-콜롬비아 FTA 제16.5조(무역과 지속발전 협력챗터: 생물다양성).

2. 대응 방안

첫째, 제공국가의 관련 법체계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은 자국의 토착민이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국가의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근 이전에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전통지식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책임기관을 파악하고, PIC 발급이 국가책임기관인지 전통지식을 보유한 토착민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두어야 한다. 페루인 경우에는 토착민 단체의 대표가 PIC을 발급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전통지식 보유자의 파악이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전통지식을 관리하는 국가책임기관 등에 문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PIC 발급에 필요한 사항, 가령 발급 소요 시간이나 비용 등과 같은 사항을 미리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둘째, 접근하고자 하는 목적이 상업적인 것인지 연구 목적용인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목적에 따라 PIC 발급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MAT 체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페루는 순수 연구 목적은 허가계약서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상업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MAT에 해당하는 허가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처음에는 연구 목적용이었다가 이후에 산업적 혹은 상업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새로운 PIC 발급을 의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해두어야 한다.

셋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토착민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토착민과 양도인이 체결한 MAT에 제3자 양도 가능 여부의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페루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착민 대표가 허가계약서에 2차 라이선스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PIC 절차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양수 받은 자가 과실에 의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확인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제공국가가 이용자의 상업적 이용 및 연구에 대한 규제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스스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 페루의 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가 외국에서 출원하는 특허사항을 확인하여 자국의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전통(집단)지식의 이용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전자원 또는 전통(집단)지식의 불법적인 접근과 이용이 불가함을 알아야 한다. 특히 이행준수위원회 등에 회부되는 일이 없도록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국제지침 및 제공국가의 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형태의 이익 공유 유형을 파악하여 이익 공유 협상의 노하우를 스스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용자들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접근보다는 이익 공유 의무가 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이익 공유에는 반드시 금전적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 교육 등 비금전적 이익 공유 유형이 있다. 이에 지역기반 사회의 파트너십을 이용하는 등의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이익 공유에 대한 학습효과를 제고하고, 발생한 이익을 총매출액 또는 순수이익 중 어떤 것으로 산정할 지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V. 결 론

나고야의정서가 발효가 된 가운데, 많은 국가가 당 의정서를 국내에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들은 입장차이가 큰 만큼 서로 다른 PIC 절차와 MAT 관련 내용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전자원 이용자들은 제공국들의 법제도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공국들의 법체계를 이해하는 일은 이용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페루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법체계를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전통지식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페루는 이미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통(집단)지식 보호를 위하여 법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즉 이용자는 전통(집단)지식을 보유한 토착민 단체 대표에게 반드시 PIC을 발급받아야 하며, 산업적 또는 상업적 이용인 경우에는 허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계약서에는 토착민 개발을 위한 기금에 일정 금액 납부를 비롯하여 이익 공유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허가계약서는 국가책임기관인 INDECOPI에 등록하여 하는 등 페루

정부는 전통(집단)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규정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유전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하는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 등이 다름을 인식하여 제공국가의 관련 법제도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그 대상을 제공자로부터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양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양도가 또는 2차인가가 가능한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허가계약서나 MAT에 이익 공유 조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협상의 노하우도 개발해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유전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불법적인 접근이 더 이상 불가능함을 인지하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주요 이용국으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 후 이용자들을 돕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무엇보다,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좁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이행법률안을 조속히 발효하여 적절한 ABS관련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러한 법제도 도입 시에는 내외국인 차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강구해 두어야 한다.

논문투고일 : 2015. 7. 15. 심사일 : 2015. 8. 14. 게재확정일 : 2015. 8. 20.

참고문헌

국립생물자원관 ABS 정보서비스센터,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안내서』, 2014.

“페루 국가 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 의장, 마카에 대한 생물해적행위 우려”, ABS Newsletter, 제82호, 2015.

“페루, 세계 특허 모니터링을 통한 생물해적행위 감시”, ABS Newsletter, 제82호, 2015.

한국-중국 FTA 협정문

한국-콜롬비아 FTA 협정문

ABSCH <https://absch.cbd.int/countries/PE>.

Agnes Rivera, “Maca Movements to Be Monitored, Says China,” Peru This Week, 2014.

Peruvian Law N° 27811 LAW INTRODUCING A PROTECTION REGIME FOR THE COLLECTIVE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DERIVED FROM BIOLOGICAL RESOURCES.

Peruvian Law N° 28216 PROTECTION ACT OF ACCESS TO PERUVIAN BIODIVERSITY AND COLLECTIVE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S.

Peruvian Supreme Decree No. 029-2014-RE.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B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Oct. 29, 2010.

[Abstract]

A Study on the Peruvian Law for Protecting Collective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Its Implications

Oh, Sun Young

(Assistant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Nagoya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was adopted on October 29, 2010 in order to 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Peru has already enforced its measures to protect their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collective)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In order to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held by indigenous peoples, the users need to get the prior informed consent from the representative of indigenous peoples’ organization and the license contract has to be made having a benefit-sharing clauses. The study on the Peruvian laws gives important implications on users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our government’s policy and legislative plann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in Korea. It would be useful to fully understand the provider countries’ laws and policies in advance of its access and the users require due attention if they get the genetic resources or traditional knowledge from a third party rather than a direct dealing with a provider country. In addition, the users must remain compliance at all times. The government of Korea also need to prepare a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the government need to examine thoroughly whether the different notification requirement between foreigners and natives can be accorded in their implementation Bill, and they need to find the ways how to protect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which is not protected by the Nagoya Protocol.

주 제 어: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 페루법,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집단지식, 사전통보
승인, 허가계약서

Key Words: Nagoya Protocol, Domestic Implementation, Peruvian Law, Traditional
Knowledge, Collective Knowledge, PIC, License Contract